

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58 |
|----------|-----|

2018년 12월 17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년 10월 12일, 최선 의원

2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29일

3. 상정일자

○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

(2018년 12월 17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최선 의원)

1. 제안이유

○ 현재 수상에서의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초등학교 3~4학년 학생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바, 향후 교육 대상이 초등학생 전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생존수영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수영교육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실태조사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18년 10월 12일 최선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58호로 발의되어 2018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생존수영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

- 교육부에서는 지난 2014년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 이후,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규교육과정에 생존수영교육을 개설하였습니다.

- 또한, 교육부는 수영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·학부모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을 6학년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.¹⁾

[표-1] 2017학년도 수영교육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)

| 대상 | 학년 | 설문 참여 인원 | 설문 응답 수 | 초등학교 3.4학년 수영교육 필요성 | | | | | | | | | |
|-----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| | 매우필요 | | 필요 | | 보통 | | 불필요 | | 매우불필요 | |
| | | | | 응답수 | % | 응답수 | % | 응답수 | % | 응답수 | % | 응답수 | % |
| 교사 | 3 | 1,712 | 1,712 | 1,037 | 60.6% | 490 | 28.6% | 117 | 6.8% | 42 | 2.5% | 26 | 1.5% |
| | 4 | 1,642 | 1,642 | 782 | 47.6% | 572 | 34.8% | 175 | 10.7% | 67 | 4.1% | 46 | 2.8% |
| | 계 | 3,354 | 3,354 | 1,819 | 54.2% | 1,062 | 31.7% | 292 | 8.7% | 109 | 3.2% | 72 | 2.1% |
| 학부모 | 3 | 10,321 | 10,321 | 5,672 | 55.0% | 3,021 | 29.3% | 1,101 | 10.7% | 307 | 3.0% | 157 | 1.5% |
| | 4 | 9,816 | 9,816 | 5,073 | 51.7% | 3,052 | 31.1% | 1,133 | 11.5% | 417 | 4.2% | 141 | 1.4% |
| | 계 | 20,137 | 20,137 | 10,745 | 53.4% | 6,073 | 30.2% | 2,234 | 11.1% | 724 | 3.6% | 298 | 1.5% |
| 학생 | 3 | 10,343 | 10,343 | 4,556 | 44.0% | 3,360 | 32.5% | 1,865 | 18.0% | 344 | 3.3% | 218 | 2.1% |
| | 4 | 11,535 | 11,535 | 4,386 | 38.0% | 3,833 | 33.2% | 2,339 | 20.3% | 476 | 4.1% | 501 | 4.3% |
| | 계 | 21,878 | 21,878 | 8,942 | 40.9% | 7,193 | 32.9% | 4,204 | 19.2% | 820 | 3.7% | 719 | 3.3% |
| 소계 | 3 | 22,376 | 22,376 | 11,265 | 50.3% | 6,871 | 30.7% | 3,083 | 13.8% | 693 | 3.1% | 401 | 1.8% |
| | 4 | 22,993 | 22,993 | 10,241 | 44.5% | 7,457 | 32.4% | 3,647 | 15.9% | 960 | 4.2% | 688 | 3.0% |
| 총계 | | 45,369 | 45,369 | 21,506 | 47.4% | 14,328 | 31.6% | 6,730 | 14.8% | 1,653 | 3.6% | 1,089 | 2.4% |

-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매년 「초등학교 3·4학년 수영교육 계획」을 수립하여 전체 597개 초등학교 3~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

1) 초등 수영 실기교육 추진 계획(안) [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-931, 2018.2.19.]

- ❖ 2018년 교육부 업무보고('18.1.29.)

-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초등 생존수영교육을 6학년까지 확대하고 '20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
※ ('18) 3~6학년 → ('19) 2~6학년 → ('20) 1~6학년

- ❖ 국정과제 : 초등 생존수영 교육 확대

- 지역적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 생존수영 교육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

2) 2018학년도 초등학교 3.4학년 수영교육 계획(체육건강과-1053, 2018.1.23.)

- 수영교육 필요성(보통이상 응답자): 93.8%

- 3학년: 94.8%, 4학년: 92.8%

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현재 정규교육과정 내 생존수영교육 수업시수 4차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3학년의 경우 6회 12차시를, 4학년의 경우 5회 10차시를 각각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3)

[표-2] 2018학년도 초등학교 3·4학년 수영교육 추진 계획

| 학년 | 전체 학교수 | 수영교육 실시교 | 미실시교 | 예산지원교 | 미지원교 (본교수영장) | 수영교육 예상학생수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3학년 | 597 | 597 (100%) | 0 (0%) | 555 (93.0%) | 42 (7.0%) | 68,292명 |
| 4학년 | 597 | 597 (100%) | 0 (0%) | 555 (93.0%) | 42 (7.0%) | 72,043명 |

○ 그러나 정부의 생존수영교육 확대 실시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수영장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바,

현재, 서울시교육청에서 보유한 수영장은 55개로 이중 초등학교 내 수영장 설치학교는 38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. 그 결과 수영장이 없는 학교 중 85.5%가 타학교 수영장(426교, 35.7%), 지자체 수영장(121교, 10.1%), 사설수영장(474교, 39.7%)등을 이용하고 있어 일반시민과 이용시간대의 중복을 피해야 하는 등 수영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
3) 교육내용

가. 초등 3학년 : 6회 12차시 (1회 2차시 운영)

나. 초등 4학년 : 5회 10차시 (1회 2차시 운영)

※ 생존수영교육 4차시 포함(반드시 수영교육 운영자와 생존수영 관련 사전협의)

| 교육내용 | 회 차 | 차 시 | 교재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생존수영 | 1 (3,4학년) | ①~② | 초등학교 수영교육 매뉴얼 (생존수영 내용 포함) |
| | 2 (3,4학년) | ③~④ | |
| 떠서 나아가기 및 물속 보며 나아가기 | 3 (3,4학년) | ⑤~⑥ | |
| 자유형으로 나아가기 | 4 (3,4학년) | ⑦~⑧ | |
| | 5 (3,4학년) | ⑨~⑩ | |
| 기록 도전하기 | 6 (3학년) | ⑪~⑫ | |

[표-3] 서울시 각급학교 수영장 보유 현황⁴⁾

| 순번 | 교육지원청 | 초 | 중 | 고 | 계 | 비고 |
|----|-------|----|---|---|----|---|
| 1 | 동부 | 4 | 1 | 0 | 5 | * 직속기관(4개) 학생체육관 강서분관 교육연수원 마포평생학습관 |
| 2 | 서부 | 7 | 1 | 0 | 8 | |
| 3 | 남부 | 1 | 0 | 0 | 1 | |
| 4 | 북부 | 3 | 1 | 0 | 4 | |
| 5 | 중부 | 6 | 0 | 0 | 6 | |
| 6 | 강동송파 | 1 | 0 | 1 | 2 | |
| 7 | 강서양천 | 2 | 2 | 0 | 4 | |
| 8 | 강남서초 | 6 | 2 | 0 | 8 | |
| 9 | 동작관악 | 2 | 0 | 2 | 4 | |
| 10 | 성동광진 | 3 | 0 | 0 | 3 | |
| 11 | 성북강북 | 3 | 0 | 1 | 4 | |
| 12 | 본청 | 0 | 0 | 2 | 2 | |
| 계 | | 38 | 7 | 6 | 51 | |

[표-4] 2018학년도 초등학교 3·4학년 수영장 이용 현황

| 학 년 | 학생 수영장 | 강서 분관 | 교육 연수원 | 지자체 수영장 | 타교 수영장 | 본교 수영장 | 사설 수영장 | 마포평생 학습관 | 청소년 수련관 | 합계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3 | 11 (1.8%) | 8 (1.3%) | 2 (0.3%) | 68 (10.6%) | 214 (35.8%) | 38 (6.4%) | 233 (39.0%) | 1 (0.2%) | 27 (4.5%) | 597 (100%) |
| 4 | 11 (1.8%) | 6 (1.0%) | 2 (0.3%) | 58 (9.7%) | 212 (35.5%) | 38 (6.4%) | 241 (40.4%) | 2 (0.3%) | 27 (4.5%) | 597 (100%) |
| 계 | 22 (1.8%) | 14 (1.2%) | 4 (0.3%) | 121 (10.1%) | 426 (35.7%) | 76 (6.4%) | 474 (39.7%) | 3 (0.3%) | 54 (4.5%) | 1,194 (100%) |

-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생존수영교육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영장 등 교육시설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, 무엇보다도 수영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실질적인 행·재정적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.
- 이런 면에서 동 조례안은 초등학교생들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

4) 자료: “2018학년도 초등 3·4학년 수영교육”, 서울시 체육건강과

지원계획 수립, 수영시설 확보, 예산 지원, 수영교육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나.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 조문별 검토

- 동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, 정의,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, 안 제4조는 수영교육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, 안 제5조는 지원계획에 따른 실태조사를, 안 제6조는 수영교육 중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또한 안 제7조는 예산지원과 수영시설 확보를 위해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, 안 제8조와 제9조는 교원의 수영교육 연수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구성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다만, 수영교육 시설 확보와 관련하여 수영장 신설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교육청은 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기관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
학교 현장에서 수영장 시설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자치구 내 공공수영장 및 사설수영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[표-5] 수영장 보유 및 학생수 현황5)

(학교수.학생수: '17.4월, 학교수영장: '17.9월 / 공공수영장: '16.9월 기준)

| 사·도 | 교육지원청 | 지자체 | 초등 학교수 | 초등 학생수 (1-6학년) | 보유수영장 | | | | | | 수영장대비 학생수 |
|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|---|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|
| | | | | | 학교 | | | | 지자체 | 합계 | |
| | | | | | 초 | 중 | 고 | 기타 | | | |
| 서울 | 동부 | 동대문,중랑 | 44 | 29,349 | 4 | 1 | 0 | 0 | 6 | 11 | 2,668 |
| | 서부 | 은평,마포,서대문 | 71 | 51,452 | 7 | 1 | 0 | 0 | 7 | 15 | 3,430 |
| | 남부 | 구로,금천,영등포 | 65 | 41,900 | 2 | 0 | 0 | 0 | 11 | 13 | 3,223 |
| | 북부 | 도봉,노원 | 65 | 44,606 | 3 | 1 | 0 | 0 | 5 | 9 | 4,956 |
| | 중부 | 종로,용산,중 | 40 | 18,468 | 6 | 0 | 1 | 0 | 10 | 17 | 1,086 |
| | 강동·송파 | 강동,송파 | 66 | 51,352 | 1 | 0 | 1 | 0 | 10 | 12 | 4,279 |
| | 강서·양천 | 양천,강서 | 66 | 51,120 | 2 | 2 | 0 | 0 | 8 | 12 | 4,260 |
| | 강남·서초 | 서초,강남 | 57 | 47,310 | 6 | 2 | 0 | 0 | 10 | 18 | 2,628 |
| | 동작·관악 | 동작,관악 | 43 | 32,925 | 2 | 0 | 2 | 0 | 7 | 11 | 2,993 |
| | 성동·광진 | 성동,광진 | 43 | 27,076 | 3 | 0 | 0 | 0 | 9 | 12 | 2,256 |
| | 성북·강북 | 성북,강북 | 43 | 32,775 | 3 | 0 | 1 | 0 | 6 | 10 | 3,278 |
| | 계 | | | 603 | 428,333 | 39 | 7 | 5 | 0 | 89 | 140 |

다.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

○ 안 제7조에 따른 초등학생 수영교육 비용은 2019년부터 초등수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가정하에 기존 3·4학년을 제외한 1·2·5·6학년 수영교육 비용추계를 실시한 것입니다

○ 초등학생 수영교육은 의무적 확대가 아닌 지역적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,

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 학년 수영교육 확대에 따른 필요 예산이 한 해 114억 3천 7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, 수영장 시설여건, 전문인력 강사 확보, 자치구 협력 연계 등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정

5) 초등 수영 실기교육 추진 계획(안) [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-931, 2018.2.19.]

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,

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·학년별로 수영교육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[표-6]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| 연도 | 1차년도 (2019) | 2차년도 (2020) | 3차년도 (2021) | 4차년도 (2022) | 5차년도 (2023) | 합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세입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| 소계(a)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세출 | 수영교육 시설 실태조사 (조례안제5조) | 3,080 | 3,080 | 3,080 | 3,080 | 3,080 | 3,080 | 15,400 |
| | 초등학생 수영교육 비용 (조례안제7조) | 11,420,016 | 11,420,016 | 11,420,016 | 11,420,016 | 11,420,016 | 11,420,016 | 57,100,080 |
| | 교원수영교육연수위탁비용 (조례안제8조) | 14,400 | 14,400 | 14,400 | 14,400 | 14,400 | 14,400 | 72,000 |
| | 소계(b) | 11,437,496 | 11,437,496 | 11,437,496 | 11,437,496 | 11,437,496 | 11,437,496 | 57,187,480 |
| □ 총 비용(b-a) | | 11,437,496 | 11,437,496 | 11,437,496 | 11,437,496 | 11,437,496 | 11,437,496 | 57,187,480 |

※총 비용= 57,187,480천원(연평균 11,437,496원)

- 또한 안 제8조의 교원수영교육연수위탁비용은 11개 교육지원청별 비용추계를 실시한 것입니다.
-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부 방침에⁶⁾ 따라 중앙(전국)단위 생존수영 현장연수를 대천임해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, 초등교원의 생존수영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연수를 연 1회(15시간, 30명) 운영하고 있는 바,
- 교육지원청별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위탁 연수를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) 초등 수영 실기교육 추진 계획(안) [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-931, 2018.2.19.]

- (중앙 단위) 초등 수영 실기교육 지도 역량을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권역별 연수 추진

* 생존수영 현장 연수(서울교육청 주관) : 총 300명(시도별 18명 내외로 탄력적 운영) 대상으로 강, 바다 등에서 실시

-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교원수영교육연수위탁에 대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실시하기에는 시설, 강사 인력, 연수생 확보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함께 2019년에 계획하고 있는 생존수영연수와 중복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. (행정관리담당관 - 11273, 2018.11.12.)

라. 서울특별시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

-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 제4조 이하에서 사용되는 “수영교육”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인 만큼 조례안 전체의 용어를 “생존수영교육”으로 명확히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.(행정관리담당관-11273, 2018.11.12.)
- 그러나 안 제3조 정의에서 “생존수영교육”을 정의하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모든 “생존수영교육”은 “수영교육”으로 약칭하여 사용하도록 이미 규정하였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용어의 혼란에서 오는 집행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또한 안 제5조 교육감 소관 수영교육 시설 및 각급학교 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, 서울시교육청은 위탁 운영 수영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.
- 그러나 생존수영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수영교육의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수영장 시설의 여건, 전문인력 강사 확보 등 학생들이 실제 교육받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생존수영교육의 확대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인바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초등학생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.
2. “생존수영교육”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(이하 “수영교육”이라 한다)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영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영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.

1. 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
2. 수영교육 대상 및 방법
3. 수영교육 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
4. 교원 연수
5. 수영교육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
6. 그 밖에 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관의 수영교육 시설 및 각급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안전조치) 교육감은 수영교육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7조(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) ① 교육감은 수영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수영시설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청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사무의 위탁)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수영교육 연수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,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